

도시가구의 연금에 관한 연구*

-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ublic Pension Payments of Urban Households*

- Single Earner Households and Dual Earners Households -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김순미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Soon-Mi Kim

『목 차』

- | | |
|--------------------|---------------|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및 관련변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urban household's monthly expenses for public pension and to analyze the contributing factors.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2002 Urban Household Survey and consisted of a sample of 21,093 urban households. Statistics us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the average urban household monthly payment for the public pension was 104,036 won, consisting of 102,757 won for single earner households and 106,014 won for dual earner households. Second, the highest expenses for monthly public pension was urban households, followed by male household head(HH), HH's age from 41-50 years, HH's educational level was college, HH's job was public servant, family didn't live in Seoul, family was an extended family and family owned the house. Third,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urban household's monthly public pension were HH'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type of job, region, type of family, number of children, type of earner, monthly total income, increase of asset in a month and house ownership.

Corresponding Author: Soon-Mi Kim,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05-764, Gung-dong 220, Yuseong-gu, Daejon, Korea Tel: 82-42-821-6848 E-mail: kims@cnu.ac.kr

* 이 논문은 2002년도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주제어(Key Words): 공적연금(Public Pension), 홀벌이가구(Single Household), 맞벌이가구(Dual Eamer Household), 은퇴설계(Retirement Planning)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한 반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게 될 고령화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후생활대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통계청(2002)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에 의하면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50여만 명에 달하며 2030년에는 천만 명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것이며, 특히 장기적인 소득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핵가족화로의 급속한 진행으로 가족 내 노인부양의식을 약화시킴으로써,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던 노인부양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개인 각자가 소득능력이 있을 때까지 스스로 노후부양을 준비하는 개인적 대책부터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 대책을 마련하는 사회적 대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적 대책은 개인이나 개별가구가 노후생활을 위해 은퇴 전에 준비를 하거나 은퇴 후에 자녀나 친척의 보조를 받는 것이며, 사회적 대책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 사회연금제도 등을 확대하여 노인생활의 일정부분을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는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된 노인부양문제와 노후생활문제를 위해 개인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독립적 부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적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각 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과 역사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 일찍부터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관심을 보인 서구의 경우,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1980년 이후부터 공적소득 보장제도인 연금제도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정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적연금, 기업연금 및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에 비해 제도의 도입시기도 늦었을 뿐 아니라 소득파악에 대한 열악한 여건 및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개인이 노후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1999년 현재 완전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수도 극히 적었다(김의기, 1999). 그러나 최근 들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급여 중 중복급여가 발생하면서 국민연금 급여수급권의 병급조정에 대해 그 타당성과 정당성문제가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병급조정은 둘 이상의 급여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하나의 급여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는 것으로서, 2001년말 현재 7019건의 총누적 건수가 발생하였고 노령연금 급여 발생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노령연금과의 병급조정 건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유족연금의 건수 순으로 발생하였다. 또 병급조정별 특징을 보면 2000년말 기준으로 전체 병급조정 대상자 중 남성이 70.4%, 여성이 29.6%였으며, 여성은 주로 유족연금과 다른 급여간 병급조정 건수가 많은 반면 남성은 노령과 장애연금 병급조정 건수가 많았다.

한편 현행의 병급조정은 홀벌이가구보다 맞벌이 가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컨대 맞벌이가구는 홀벌이가구에 비해 부부가 공히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지불했

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에 높은 쪽의 급여를 선택하도록 하는 병급조정 장치로 홀벌이가구와 거의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되는 불리함이 있다(오마이뉴스, 2004. 8. 4). 이밖에도 2030년 중반이 되면 기금이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도입기간이 짧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으로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광준 외, 1999). 이러한 상황은 노령, 사망, 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구에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위험발생에 따른 근로자가구의 퇴직 및 노령빈곤을 대비한 소득보장대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경제적 생활불안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적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편 가정경제적 관점에서 개인 및 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현재 생활과 미래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인 되며, 특히 개인과 가구의 시간적 선호에 따른 연금의 선택과 지출은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재무설계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통계청(2002)의 사회통계조사결과를 보면, 가구주의 64.5%가 노후준비를 하며 노후준비방법으로는 공적연금(28.4%), 사적연금(15.9%), 예비적금(13.6%), 퇴직금(2.3%) 등을 선택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연금은 현재 지출인 동시에 미래 소득을 담보하는 재무설계의 한 차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금제도 선택은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가정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안이지만, 연금지출에 대한 이해와 실태 파악은 주로 거시적 차원의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고 가정경제 관련분야에서 다루어진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세부적 분석 또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가구의 연금지출 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사회보장적 측면의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 지출분석에 초점을 두며, 이는 국민연금 수급에서 나타나는 병급조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장기적 재무설계를 위한 정보 및 가정

경제학적 차원에서의 연금연구의 계획과 방향 설정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미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가정경제 설계를 위해 중요한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연금수요파악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및 개선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II. 선행연구 및 관련변수 고찰

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공적연금제도는 국가가 실시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 가운데서 생활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국가가 연금분야에 개입하는 것은 퇴직을 대비하는 저축이 개인이나 시장에 의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공적연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김일중, 1999; 문숙재·윤소영·최자경, 2003).

첫째,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부족하다. 근로자들은 은퇴시기에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 후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들이 은퇴했을 때 적절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소득의 일부를 연금보험료로 저축하도록 강조하는 제3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둘째,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한 근로자는 저축하지 않은 근로자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비한 저축을 하는 대신 공공부조에 의한 최저생계를 보장받으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성실하지 못한 근로자가 성실한 저축을 하는 근로자에게 은퇴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정부는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근로자들이 근로기간 동안 공적연금에 기여하도록 강제하여 공공부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구성원 전체가 노인소득보장비용을 고루 부담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셋째, 공적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소

득재분배는 사회가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려는 집합적 결정을 할 때 발생하며,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은 생애소득이 낮은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연금가입자가 경제활동 기간 중에 보험료를 기여하고 국가는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과 같은 소득상실 위험에 직면할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강제보험방식이다. 공적연금제도를 사회보험형태로 실시하는 국가는 정부조직이 운영하거나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 관장하며 피보험자의 가입은 법적으로 강제 적용된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기여금으로 구성되는데,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후, 1963년에는 군인연금,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 1988년이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기초적 틀을 마련하였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9년에는 적용대상을 도시지역 자영업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까지 포함시키면서 전국민연금 제도로 확대되었다. 또 2008년부터는 10년 이상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면 생존기간동안 종신노령연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큰 역할을 하지 못해 제도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포괄성, 적절성 및 재

분배성 등의 외형적 측면에서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김상균, 2000)의 상반적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본적 특성은 가입자가 근로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퇴직 후 연금을 받는 보험기능, 소득계층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기능, 그리고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강제저축기능이 있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2)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층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종합적 사회보험으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이 특징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간의 자생적, 임의적 공제제도 및 국가재정에 의한 직접부담방식의 공적부조와 구별되며, 국가권력 및 법률에 의해 강제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이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급여 외에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민간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 급여 등의 폭넓은 보장기능이 있으며 현직공무원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최재식, 1998, 1999).

3) 군인연금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실시되다가 1963년에 별도로 분리된 제도로, 현역 또는 소집에 의해 실지 군에 복무하는 중·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신체적 장애, 만기 및 정년으로 인한 제대, 퇴역, 전사, 사망 시에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안정 보장과 복리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연

금이다. 이밖에 군인의 질병·부상·재해 시에도 재해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재해보상금도 포함된다. 군인연금의 재정부담은 군인 각자가 매월 내는 월보수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국고 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군인연금이 사회보험인가 하는 문제는 이견도 있으나 각출의 기본원칙과 취약계층으로의 전락방지, 나아가 가족의 생계보호라는 점에서 사회보험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선구, 1999).

4) 사립학교교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이하 '사학연금제도')은 사립학교교원 및 직원의 퇴직·사망,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공·사립학교간의 형평적 쳐우, 급여발생사유에 따른 즉시 지급, 재직 중 재해·휴양 급여, 퇴직 후 퇴직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지급, 교원에 대한 부담금 중 일부 국가부담, 장기 근속자 우대, 급여의 실질가치 보장 등의 특징이 있다.

사학연금의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한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의 지급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또 사학연금의 비용부담주체는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이며 사학연금에는 퇴직·사망 시에 받는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민간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 및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기금의 조성·증식관리 및 제도운영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한다.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은 각급 학교에 이르는 사립학교와 특수학교,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이며, 임의 적용대상은 사립유치원, 기술학교, 전수학교, 각종학교 등의 교직원과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임시직, 조건부 또는 무보수 교직원, 정원 외의 사무직은 제외된다(김현국, 1999).

3. 공적연금의 관련변수 고찰

공적연금은 노후생활설계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의 미래 지출을 위한 시간선회적 현재 지출이며 저축적 특성을 갖는다. 기존 공적연금에 관한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연금,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이나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개별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자금운용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다(진용성, 1996; 권문일, 1999; 김일중, 1999; 김현국, 1999; 정선구, 1999; 김상균, 2000; 석재은·김태완, 2000; 윤석명, 2000; 석재은·김용하, 2001; 정경배 외, 2001; 석재은, 2002; 최현수, 2002;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그러나 사회복지학 분야, 경제학 분야 등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노후빈곤, 노후소득보장, 노후소득불평등 등에 초점을 두고 거시적 차원에서 공적연금을 분석하였으며, 미시적 차원의 가정경제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연금보유여부와 불입액, 은퇴후의 경제적 복지예측을 위한 저축, 저축으로서의 은퇴자산 및 은퇴소비 등에 초점을 둔 소수의 연구로서, 저축 및 연금에 근거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요인을 적용하였다.

가계의 개인연금보유 여부와 불입액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문숙재·김연정(1997)은 개인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계변수로 거주지역,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 외에 경제적 만족도와 1년후 경제수준 전망 등을 들었으며, 재정변수로는 가계총소득, 순자산, 예금보유 유무와 주식보유 유무 등을 포함시켰다. 또 충분한 은퇴자산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여윤경(1999)은 은퇴자산이 충분한 집단과 불충분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교육수준, 가구원수, 18세 이하 가구원수 비율, 직업, 자영업 소유여부, 연간 가계소득, 주택소유여부, 은퇴계획 연령, 은퇴자산 중 주식구성비, 가계소득과 가계지출 차액 등의 변수를 고려하였는데, 은퇴자산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은퇴 후 경제적 복지를 결정하는 은퇴소비를 추정한

문숙재·여윤경(2001)은 은퇴소비를 파악하기 위해 연간 현재저축액과 연간 요구저축액간의 차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주 연령, 자산소유, 부채소유,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원수, 학령기 자녀수, 직업, 가구주의 성별, 맞벌이부부여부, 거주지역 및 가구소비유형 등을 제시하였는데, 은퇴소비는 현재저축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저축액의 한 방안인 연금과 관련지어 고려할 수 있다.

2001년 국민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가입종별,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태를 보면, 전체 연금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30.6%에 불과하며 남성 가입자는 69.4%를 차지하여 남성 가입자수가 2배 이상 많은데 이것은 성별에 따른 취업률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유추할 수 있다. 또 Collins & Wyckoff(1988)는 성별이 IRA 보유률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문숙재·여윤경(2001)은 여성 가구주에 비해 남성 가구주는 현재저축 외에 다른 형태의 은퇴자산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현재 저축동기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현재저축동기의 감소는 노후준비방안인 연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은퇴준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관심이 증대하며, 특히 중년기 이상의 연령층에서 많이 증가하게 된다. Weagly & Gannon(1991)는 50-60대까지 IRA와 Keogh plan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령과 연금가입은 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한 반면, Gale & Scholz(1994)는 연령이 증가하면 IRA 가 증가하다가 중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역U자형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 문숙재·김연정(1997)은 가구주의 연령이 개인연금불입액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연금보유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연금정책 도입목적과 저연령층의 절세방안에 대한 적극성 측면 때문이며 은퇴에 가까운 연령일수록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Fillenbaum 외(1985)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Marloutou & Xiao, 1995에서 재인용).

Beck(1984)는 교육수준이 높아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은퇴준비 프로그램인 연금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Collins &

Wyckoff(1988)도 교육수준이 IRA 보유확률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숙재·여윤경(2001)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현재저축액이 요구저축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현재소득을 절약해서 은퇴에 대비하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자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가입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숙재·김연정(1997)은 가구주 직업이 봉급생활자인 경우에 비해 자영업 또는 농림수산업이나 비정규직일 때 개인연금을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불입액도 증가한다고 하면서 이는 개인연금의 도입목적에 따라 기존의 각종 연금혜택에서 배제된 자영업자의 연금수혜방안으로 적절하게 수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 여윤경(1999)은 전문·경영·관리직보다 서비스직이나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충분한 은퇴자산을 가질 가능성이 적다고 하여 직업에 따라 나타나는 노후준비의 차이는 연금가입 및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연금보유 실태를 분석한 문숙재·김연정(1997)은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계가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보다 개인연금을 보유할 확률이 더 높고 개인연금 불입액은 더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문숙재·여윤경(2001)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현재저축액이 요구저축액을 능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노후생활설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족형태가 노인부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형태에 따라 독립적 부양과 의존적 부양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은 가족의 책임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결속력 약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은퇴 후 발생하는 경제문제, 건강문제, 주거문제 등에 대한 독립적 부양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도출해냈으며(박재간, 1995; 강기선, 1997; 김혜연 외, 1999; 설말순, 1999),

이것은 노후 독립적인 재무설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노후부양에 관한 연구들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부양책임을 갖는 자녀에 대해 초점을 두었으며(이가옥, 1990, 1995), 특히 가족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녀나 아들의 존재여부는 노후부양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이연숙 등(1999)은 노인부부 중 혼자 남게 될 경우 아들과 같은 집 또는 이웃에 살면서 정서적, 경제적 지원 및 간호서비스를 받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특히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성향은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문숙재·여윤경(2001)은 학령기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비지출 등으로 인해 현재저축액이 요구저축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미래 저축보다 현재 지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노후준비의 불충분성이 예측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소득원유형 및 소득원수는 노후생활설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문숙재·여윤경(2001)은 맞벌이가계가 홀벌이가계보다 현재저축액이 요구저축액을 능가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적 관계를 제시하면서 그 이유를 소득원 증가와 그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로 보았는데, 이는 맞벌이가계의 노후준비의 충분성과 관련지어 살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Hubbard(1984)는 항상소득이 IRA와 Keogh plan의 보유학률과 정적 관계를 보이며, Collins & Wyckoff(1988)도 가계총소득과 유동성자산이 IRA 보유학률에 대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ubbard, Skinner & Zeldes, 1994에서 채인용). 반면 Weagly & Gannon(1991)은 가계의 부가 많을수록 IRA나 Keogh plan과 같은 은퇴보장성이 강한 안정자산보다는 증권과 같은 위험자산에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하였다. 또 Zhong(1995)는 가계가 자산포트폴리오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유형의 자산보유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자산보유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축할 경우에는 IRA의 보유학률이 낮고 주식, 채권, 보험을 가진 경우에는 보유학률이 높다고 하였다. 문숙재·김연정(1997)은 순자산이 많을

수록, 그리고 예금을 보유한 가계가 개인연금 불입액이 더 많으며, 가계총소득이 많고 주식을 보유했을 때 개인연금을 보유할 확률이 높다고 하여 IRA의 보유여부와 주식보유액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Zhong 외(1995), 주식과 보험을 가진 경우에 IRA의 보유학률이 높다고 한 Xiao(1995)의 연구와도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총소득 및 자산보유가 개인연금 보유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은 가계가 보유한 소득과 부가 많을수록 재무적 노후준비에 적극적이라는 Turner, Bailey & Scott(199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은 미래 지출을 위한 현재저축이며, 따라서 저축과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 등의 인구학적 특성, 거주지역, 가족형태, 자녀수, 소득원유형의 가족관련요인, 그리고 총소득, 자산증가 및 주택소유 등의 재정관련요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도시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특성에 따라 공적연금 지출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먼저,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달 지출하는 공적연금액을 살펴 보았다. 이 때 공적연금액은 특수직 근로자가구가 매달 지불하는 퇴직기여금과 근로자가구가 매달 지불하는 국민연금액을 합산하였다. 둘째, 도시가구 특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

해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가족형태, 주택소유여부별 공적연금액을 조사하였다. 셋째, 도시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가 매달 지출하는 평균 공적연금액을 정하였으며, 가구주 관련 변수로는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 가족 관련변수로는 거주지역, 가족형태, 자녀수, 소득 원유형, 가계재정 관련변수로는 총소득, 자산증가 및 부채감소, 주택소유 여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된 도시가계조사(2002)의 원자료이며,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충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 및 지출생활실태와 변동사항을 가계부기장방식으로 파

악한 것이다.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국민생활수준의 측정 및 분석에 적합하며 특히 종속변수인 공적연금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에 유용하다. 도시가구의 공적연금을 조사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공적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공적연금에 포함된 국민연금의 병적급여 문제를 분석하는 전 단계로서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로 구분하여 공적연금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매달 공적연금을 지불하는 홀벌이가구인 12,809 가구와 맞벌이가구인 8,284 가구를 합하여 총 21,093 가구를 표본으로 정하였으며 조사대상 표본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 분석방법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공적연금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t검증을 하였다. 도시가구의 일반적 특성별 공적연금액을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t-test를 하였으며 추후검증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공적연금	퇴직기여금 지불액 + 국민연금 지불액					
퇴직기여금	월평균 퇴직기여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천원/월)					
국민연금	월평균 국민연금(천원/월)					
가구주관련변수						
가구주 성별	1=남성 (세)	0=여성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교육년수(년)					
가구주 직업	1=공무원	2=사무직	3=기능공 등	4=임시직 등		
가족관련변수						
거주지역	1=서울	0=기타				
가족형태	1=핵가족	2=확대가족				
자녀수	동거자녀수(명)					
소득원유형	1=홀벌이가구	0=맞벌이가구				
가계재정관련 변수						
총소득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천원/년)					
자산증가	가구의 월평균 자산증가액(천원/월)					
주택소유 유무	1=유	0=무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주형 변수	전체가구(21093)		홀별이가구(12809)		맞별이가구(8284)		χ^2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구주 남 성별 여	19922 1171	94.45 5.55	12066 743	94.20 5.80	7856 428	94.83 5.17	3,857*
가구주 직업 공무원 사무직 기능공 등 임시직 등	2071 7240 9816 1336	12.81 34.32 46.54 6.33	1686 4619 5709 795	13.16 36.06 44.57 6.21	1015 2621 4107 541	12.25 31.64 49.58 6.53	59,841***
거주지역 서울 기타	3572 17521	16.93 83.07	2210 10599	17.25 82.75	1362 6922	16.44 83.56	2,359
가족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19283 1810	91.42 8.58	11781 1028	91.97 8.03	7502 782	90.56 9.44	12,827***
주택소유 유 여부 무	13960 7133	66.18 33.82	8511 4298	66.45 33.55	5449 2835	65.78 34.22	1.003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value
가구주연령(세)	41,701	8,899	41,414	9,080	42,143	8,594	-5.82***
가구주교육수준(년)	12,928	2,962	13,026	2,945	12,777	2,982	5.97***
자녀수(명)	1,549	0.858	1,606	0.838	1,460	0.882	12.11***
총소득(천원/월)	5,913,243	4,265,421	5,711,223	4,315,783	6,225,614	4,167,380	-8.57***
경상소득(천원/월)	2,991,323	1,517,524	2,746,990	1,424,591	3,369,120	1,578,251	-29.68***
비경상소득(천원/월)	133,117	621,234	140,674	602,350	121,430	649,217	2.20*
기타수입(천원/월)	2,544,596	3,522,901	2,588,471	3,665,981	2,476,755	3,288,502	2.25*
전월이월금(천원/월)	244,208	244,565	235,088	238,827	258,308	252,548	-6.74***
총지출(천원/월)	5,913,226	4,265,421	5,711,209	4,315,782	6,225,593	4,167,382	-8.57***
가계지출(천원/월)	2,347,100	1,469,053	2,281,223	1,404,416	2,448,962	1,558,361	-8.11***
기타지출(천원/월)	3,323,667	3,590,256	3,197,535	3,695,440	3,518,696	3,412,309	-6.35***
자산증가(천원/월)	2,847,499	3,086,402	2,716,378	3,106,117	3,050,244	3,044,758	-7.68***
부채감소(천원/월)	476,168	1,460,396	481,158	1,658,323	468,452	1,085,543	0.62
순자산증가(천원/월)	2,371,331	3,229,136	2,235,220	3,337,624	2,581,791	3,042,043	-7.62***
월말현금잔고(천원/월)	242,459	247,309	232,450	240,348	257,935	256,950	-7.32***

* p < .05, *** p < .001

으로서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적연금액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에 앞서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계수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PC SAS Program(Ver. 8.2)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도시가구의 공적연금 실태

도시가구가 매달 지출하고 있는 공적연금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전체가구는 평균 104,036원의 공적연금을 지출하였고, 도시가구 중 홀별이가구는 평균 102,757원의 공적연금을 지출하였으나 맞별이가구는 홀별이가구에 비해 3,257원 더

〈표 3〉 공적연금 지출실태

(단위 : 원)

공적연금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t-value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공적연금	21093	104,036	63,298	12809	102,757	57,609	8284	106,014	71,165	-3.65***
퇴직기여금	3599	27,691	66,610	2095	25,635	61,981	1504	30,869	73,084	-5.58***
국민연금	18175	76,346	56,627	10917	77,122	56,631	7256	75,145	56,602	2.48*

* p < .05, *** p < .001

많은 평균 106,014원의 공적연금을 지출하였다. 또 전체가구의 퇴직기여금은 평균 27,691원, 국민연금은 평균 76,346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홀벌이가구는 평균 102,757원의 공적연금을 지출하였지만 그 중 평균 25,635원의 퇴직기여금과 평균 77,122원의 국민연금을 지출하고 있었다. 한편 맞벌이가구는 평균 106,014원의 공적연금을 지출한 반면, 평균 30,869원의 퇴직기여금과 평균 75,145원의 국민연금을 지출하였다.

한편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각각 비교해 볼 때, 모든 가구유형이 퇴직기여금에 비해 2.76배, 3.01배, 2.43배정도 더 많은 국민연금을 지출을 하고 있었으며,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를 비교해 보면, 퇴직기여금의 경우는 홀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에 비해 더 적게 지출한 반면 국민연금은 더 많이 지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에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또한 85% 이상을 나타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도시가구의 특성에 따른 공적연금 분석

도시가구의 특성에 따른 공적연금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구주성별에 따른 공적연금은 전체가구의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었으며, 공적연금액도 1.5배정도 많은 106,133원을 지출하였다. 또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도 전체가구의 공적연금의 가입 및 지출액에 있어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자가구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자가구주에 비

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2002)의 국민연금 남녀가입율을 조사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 성별이 IRA 보유률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Collins & Wyckoff(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문숙재·여윤경(2001)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주의 연령에 있어서는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모두 40대인 경우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많은 공적연금을 지출하였으며, 홀벌이가구의 30세이하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공적연금을 지출하였고 맞벌이가구의 50대이상의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공적연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와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액이 증가하다가 40대에서 감소하는 현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IRA투자액이 증가하다가 중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역U자형을 보인다는 Gale & Scholz(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특히 저연령층의 공적연금 지출액이 적은 것은 젊은 근로기간으로 인해 공적연금에 가입하는 비율이 낮거나 저소득에서 많은 공적연금을 지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살펴 보면,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매달 지출하는 공적연금이 더 많았는데, 이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은퇴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며(Beck, 1984), IRA 보유률에 교육수준이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Collins & Wyckoff(198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구주의 직업에 있어서도 전체가구, 홀벌이

<표 4> 도시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적연금

공적연금		전체(21093)			홀벌이(12809)			맞벌이(8284)		
범주형 변수		빈도	평균/t, F	D	빈도	평균/t, F	D	빈도	평균/t, F	D
가구주 성별	남	19922	106,133		12066	105,024		7856	107,836	
	여	1171	68,371		743	65,947		428	72,578	
		21093	401,08***		12809	330,31***		8284	100,83***	
가구주 연령	30세이하	1943	77,053		C	1139	68,564	D	804	89,080
	31-40세	8224	101,031		B	5445	95,698	C	2779	111,482
	41-50세	6926	117,218		A	3686	119,699	A	3240	114,396
	51세이상	4000	100,496		B	2539	108,640	B	1461	86,345
		21093	235,78***			12809	295,12***		8284	74,77***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3326	71,432		C	1851	72,708	C	1475	69,830
	고졸	9020	93,152		B	5486	97,366	B	3534	86,611
	전문대이상	8747	127,657		A	5472	118,326	A	3275	143,248
		21093	1333,10***			12809	513,73***		8284	946,05***
가구주 직업	공무원	2701	182,188		A	1686	168,811	A	1015	204,409
	사무직	7240	113,283		B	4619	107,847	B	2621	122,863
	기능공 외	9816	81,866		C	5709	84,861	C	4107	77,703
	임시직 외	1336	58,816		D	795	61,613	D	541	54,705
		21093	2898,55***			12809	1426,94***		8284	1582,45***
거주지역	서울	3572	97,409			2210	97,873	A	1362	96,655
	기타	17521	105,387			10599	103,775	B	6922	107,856
		21093	47,25***			12809	19,22***	C	8284	28,28***
가족형태	핵가족	19283	103,762			11781	102,856	D	7502	105,185
	확대가족	1810	106,959			1028	101,624	E	782	113,972
		21093	4,22*			12809	0.43	F	8284	10,81**
주택소유 여부	유	13960	114,6720			8511	113,980	G	5449	115,753
	무	7133	83,2207			4298	80,533	H	2835	87,296
		21093	1233,61***			12809	1040,82***	I	8284	309,28***

* p < .05, ** p < .01, *** p < .001

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경우 공무원 집단이 가장 많은 공적연금을 받고 있었고 사무직, 기능공 외, 임시직 외의 순이었다. 특히 전체가구의 임시직 집단이 매달 지출하는 공적연금은 공무원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32%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홀벌이가구는 약 36%, 맞벌이가구는 약 27%정도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직업별 공적연금 차이는 미래 노후생활에서 공적연금의 계층별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비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의 안정성과 공적연금제도도 가입기간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되며, 전문·경영·관리직

보다 서비스직이나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충분한 은퇴자산을 가질 가능성이 적다고 한 여윤경(1999)의 연구결과에 따라 직업별 노후준비의 차이는 연금가입 및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매달 지출하는 공적연금을 비교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가 기타지역에 비해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개인연금 불입액이 더 적다는 문숙재·김연정(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전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핵가족일 때에 비해 확대가족일 때 공적연금 지출액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홀벌이가구는 이와 반대로 핵가족일 때의 공적연금이 확대가족일 때에 비해 높았지만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맞벌이가구가 확대가족일 때 공적연금지출액이 높은 것은 소득원수가 많기 때문에 소득수준도 높아져서 공적연금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공적연금의 차이를 보면,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모두 주택을 소유한 집단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 더 많은 공적연금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 및 직업유형이 재정상태와 깊은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주택소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순자산이 많을수록 가계의 개인연금 불입액이 더 많다고 한 문숙재·김연정(1997)의 연구결과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3. 도시가구의 공적연금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도시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가구의 가구주 관련변수, 가족관련 변수, 가계재정관련 변수 등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전체가구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기능공직업집단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연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총소득, 다음으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었고,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변수는 자녀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53.01%이었다.

가구주 관련변수를 살펴 보면,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가

<표 5> 도시가구의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변수	전체가구(21093)		홀벌이가구(12809)		맞벌이가구(8284)	
	Parameter Estimate	S. E.	Parameter Estimate	S. E.	Parameter Estimate	S. E.
가구주관련변수						
성별(남성)	11,301***	0.041	14,844***	0.060	8,369***	0.026
연령	0.520***	0.073	0.756***	0.119	0.347***	0.042
교육수준	2,807***	0.131	2,982***	0.152	2,564***	0.107
직업 공무원	7,871***	0.054	2,047	0.016	20,177***	0.117
사무직	12,387***	0.085	9,255***	0.069	17,586***	0.107
기능공 등	-1,270	-0.010	-0.523	-0.004	-0.817	-0.006
가족관련변수						
거주지역(서울)	-5,970***	-0.036	-1,801	-0.012	-14,895***	-0.078
가족형태(핵가족)	-11,374***	-0.050	-16,892***	-0.080	-3,239	-0.013
자녀수	-0.867*	-0.012	-1,030*	-0.015	0.487	0.006
소득원유형(홀벌이가구)	-6,320***	-0.049				
가계재정관련 변수						
총소득	0.031***	0.573	0.029***	0.542	0.033***	0.577
자산증가	1,770***	0.086	1,450***	0.078	2,250***	0.096
주택소유(유)	5,526***	0.041	7,915***	0.065	0.174	0.001
상수	-56,196***		-63,922***		-57,410***	
R-square	0.5301		0.4960		0.5835	
F value	1828.91***		1049.43***		965.68***	

* p < .05, ** p < .01, *** p < .001

구주의 직업이 사무적인 집단, 가구주의 연령, 공무원인 집단, 가구주의 성별의 순이었다. 가구주의 성별에서는 여자가구주에 비해 남자가구주가 공적연금에 더 많은 지출을 하였으며,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에 더 많은 지출을 하였다. 또 직업을 보면 임시직 집단에 비해 공무원 집단과 사무직 집단 모두가 공적연금에 더 많은 지출을 하였으며,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구의 영향력이 공무원인 가구의 영향력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구주가 공무원으로 종사하는 가구주보다 노후준비에 대한 대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문숙재·김연정(1997)과 여윤경(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족관련 변수에서는 모든 변수가 공적연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형태의 영향력이 가장 커졌으며, 자녀수의 영향력은 가장 낮았다. 거주지역 변수를 보면 기타지역 거주가구에 비해 서울지역 거주가구인 경우에 공적연금을 더 적게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개인연금 불입액이 적다는 문숙재·김연정(1997)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 확대가족에 비해 핵가족인 경우, 맞벌이가구보다 홀벌이가구인 경우에도 공적연금을 더 적게 지출하였는데, 그것은 가족수가 많거나 소득원수가 많을 경우 공적연금의 가입기회가 많고 공적연금 불입액도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공적연금 지출액이 감소한 결과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출로 인한 공적연금 지출액 감소를 보고한 문숙재·여윤경(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녀수가 많은 경우 노인부양책임이 부분적으로 자녀에게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이연숙 외, 1999)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가계재정 관련변수에서는 총소득, 자산증가 및 주택소유 변수가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항상소득과 IRA 및 Keogh plan의 보유확률간의 정적 관계를 밝힌 Hubbard(1984)의 연구결과와 가계총소득 및 유동성 자산이 IRA 보유확률에 대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Collins & Wyckoff(1988)의 연구결과(Hubbard, Skinner & Zeldes, 1994에서 재인용), 그리고 가계 총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보유확률이 높고 순자산이 많을수록 개인연금 불입액이 더 많다는 문숙재·김연정(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홀벌이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면 공무원 직업, 기능공 직업, 거주지역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전체가구와 마찬가지로 총소득이었으며, 다음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었고,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변수는 자녀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49.60%이었다.

먼저 가구주 관련변수는 가구주의 교육수준, 연령, 사무직, 성별의 순으로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 가구주의 성별을 보면 여자가구주 보다 남자가구주,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에 더 많은 지출을 하였다. 또 가구주의 직업에서는 임시직에 종사하는 가구에 비해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구가 공적연금에 더 많은 지출을 하였는데, 이는 홀벌이가구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구가 36%, 임시직에 종사하는 가구가 6%정도인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측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무직 가구가 임시직 보다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관련 변수에서는 가족형태와 자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는데, 가족유형이 핵가족일 때,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 때 공적연금을 더 적게 지출하였다. 그것은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인 경우에 홀벌이가구일 확률이 높고 총소득 또한 적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위해 공적연금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가계재정 관련변수에서는 월평균 총소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다음으로는 자산증가, 주택소유 변수의 순이었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매달 자산이 증가할수록 매달 지출하는 공적연금이 증가했으며, 주택을 보유하는 가구가 그렇

지 않은 가구에 비해 공적연금을 더 많이 지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총소득이 높고 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연금보유확률과 연금불입액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Hubbard, 1984; Collins & Wyckoff, 1988; Hubbard, Skinner & Zeldes, 1994; 문숙재·김연정, 1997)를 지지한다.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구주의 직업이 기능공인 집단, 가족형태, 자녀수, 주택소유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전체가구 및 홀벌이가구와 마찬가지로 총소득이었으며,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성별이었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58.35%였다.

먼저 가구주 관련변수에서는 가구주의 성별이 남자가구주일 때,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에 더 많은 지출을 하였다. 또 가구주의 직업이 공무원인 가구와 사무직인 가구가 임시직인 가구보다 더 많은 공적연금을 지출하였고, 공적연금에 대한 영향력은 사무직인 가구보다 공무원인 가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가구의 직업에서 공무원 집단의 규모가 사무직 집단의 규모보다 작지만 평균 공적연금액이 2배 가까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관련 변수는 거주지역만이 공적연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기타지역 거주가구에 비해 서울지역 거주가구인 경우에 공적연금을 더 적게 지출하였는데, 그것은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개인연금 불입액이 적다는 문숙재·김연정(1997)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 가계재정 관련변수에서는 월평균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매달 자산이 증가할수록 매달 지출하는 공적연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가구 및 홀벌이가구와 같은 결과로서 가계총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보유확률이 높고 순자산이 많을수록 개인연금 불입액이 더 많다는 문숙재·김연정(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각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가구주관련변수에서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가구주의 직업이 사무직인 집단은 세 집단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가구주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홀벌이가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맞벌이가구에서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기능공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련변수에서 거주지역은 홀벌이가구의 공적연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맞벌이가구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 형태와 자녀수는 홀벌이가구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맞벌이가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가계재정 관련변수에서 총소득과 자산증가는 세 집단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주택소유 변수는 홀벌이가구의 공적연금에는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의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연금지출의 실태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매달 지출하는 공적연금액과 퇴직기여금 및 국민연금액을 조사하고 도시가구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적연금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도시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구는 매달 약 104,036원의 공적연금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퇴직기여금은 27,691원, 국민연금은 76,346원을 지출하였다. 또 홀벌이가구는 공적연금에 102,757원을 지출하였지만 퇴직기여금은 25,635원, 국민연금은 77,122원을 지출하였고, 맞벌이가구는 106,014원의 공적연금을 지출한 반면, 퇴직기여금은 30,869원, 국민연금은 75,145원을 지출하였다. 또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모든 가구 유형이 퇴직기여금보다 국민연금에 더 많은 지출을 하여 국민연금의 비율은 공적연금의 70% 이상을

나타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또한 85% 이상이었다. 그러나 공적연금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연금의 정체성, 국민연금 운영상의 불공정 및 불공평, 연금기여액의 증가와 연금수령액의 감소 및 연금수급권의 병급조정 제한 문제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 노후준비방안인 연금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노후부양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확고한 정착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시가구의 특성별 공적연금 지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모두 남자가구주가 여자가구주보다 공적연금에 더 많이 가입하였으며, 공적연금 지출액도 더 많았다. 또 전체가구와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연금 지출액이 증가하다가 40대에서 가장 많은 공적연금을 지출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교육수준을 보면,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매달 지출하는 공적연금이 더 많았으며,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가구주 직업이 공무원일 때 공적연금 지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무직, 기능공 외, 임시직 외의 순이었다. 거주지역을 비교해 보면,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모든 가구유형에서 서울거주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이 기타지역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전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해가족일 때에 비해 확대가족일 때 공적연금 지출액이 다소 높았지만 홀벌이가구는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모두 주택을 소유한 집단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 더 많은 공적연금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구를 위해 노후보장제도인 연금가입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이 가족형태를 제외한 다른 특성에 따라 모두 유사한 차이를 보인 점은 소득원 유형에 따른 공적연금 지출이 다르지 않고 노후부양제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소득원수가 많은 가구의 공적연금 지출과

연금수급권의 병급조정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도시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가구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공무원 및 사무직의 직업유형, 거주지역, 가족형태, 자녀수, 소득원유형, 총소득, 자산증가 및 주택소유 변수가 공적연금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총소득이었고 다음으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었으며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변수는 자녀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53.01%이었다. 홀벌이가구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사무직의 직업유형, 가족형태, 자녀수, 총소득, 자산증가 및 주택소유 변수가 공적연금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총소득이었고, 다음으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었으며 가장 영향력이 적은 변수는 자녀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49.60%이었다. 또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공무원 및 사무직의 직업유형, 거주지역, 총소득, 자산증가였으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총소득이었고,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성별이었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58.35%였다.

전체가구,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요인별로 비교해 보면, 가구주관련변수에서 직업유형과 소득원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공적연금 지출액의 차이는 직업과 소득원집단에 따라 차별화된 노후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가족 관련변수에서 거주지역, 가족형태 및 자녀수가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 노후생활설계, 연금선택 및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노후부양의식 변화를 고려한 연금가입범위 및 제도개선의 추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가계재정 관련변수에서 총소득과 자산증가는 세 유형의 가구 모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주택소유 변수가 홀벌이가구에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맞벌이가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는, 홀별이가구의 총소득이 맞벌이 가구에 비해 낮고 주택을 소유한 홀별이가구가 공적연금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 및 자산보유수준이 적은 가구를 위해 노후생활설계 및 노후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를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홀별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액에 있어서 퇴직기여금보다 국민연금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난 결과에도 불구하고, 특수층 종사자, 배우자 및 기타가족원 각자의 퇴직기여금 및 국민연금 지출부담액이 명확하지 않고, 사회보험적 차원의 연금역할, 장기적 노후보장제도 및 가족생활주기적 재무설계차원의 국민연금 역할에 대한 인식 또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소득원수와 구성에 따른 국민연금의 지출액과 수급액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연구결과에 기초한 평생재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후부양방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홀별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소득원 유형에 따라 공적연금 지출이 다르지 않은 결과는 공적연금이 소득원 유형별 노후부양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원수 증감에 따른 연금기여액과 연금수급액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보험료 강제징수 및 연금 수급권 제한에 관한 문제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직업유형별 공적연금 지출액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의 연금 형평성문제와 연계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에 근거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문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홀별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 지출액에 대한 연구결과는 총소득수준에 따른 연금제도 개선을 시사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최저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면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홀별이가구의 총소득수준이 맞벌이가구에 비해 낮은 점에 비추어볼 때, 최저

생계보장과 빈곤방지 측면에서 접근한 기초생활보장제를 고려하는 연구의 시도와 함께 소득원 유형별 연가입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기선(1997). 유료노인 간호요양원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국민연금관리공단(2002). 국민연금 실무편람.
- 국민연금관리공단(2003). 국민연금제도 개선안과 관련된 쟁점. 한국사회보장학회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2003년도 추계정책토론회.
- 권문일(1999). 국민연금급여의 적절성 분석.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구보고서, 99-11.
- 권문일(2003). 노후소득과 공적연금급여의 적절성. 여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9, 89-97.
- 권문일(2001). 공적연금 재정전정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 7-36.
- 김상균(2000). 연금제도의 리노베이션과 리스터링쳐링. 보건복지포럼, 4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익기 외(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일중(1999). 노후대비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한국정책학회보, 8(1), 137-154.
- 김현국(1999).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제도현황. 공사연금제도개선 실무위원회 내부자료.
- 김혜연, 김성희(1999).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와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2), 85-97.
- 문숙재, 김연정(1997).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여부와 불입액의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265-277.
- 문숙재, 여윤경(2001). 예비노인의 은퇴와 경제적 복지의 예측. 소비자학연구, 12(1), 115-131.

- 문숙재, 윤소영, 최자경(2003). 주부의 연금수급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기초하여. *한국기정관리학회지*, 21(1), 61-72.
- 박광준 외(1999). 고령화 사회와 사회복지. 세종출판사.
- 석재은(2002).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7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 김용하(2001). 공적연금제도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 김태완(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설말순(1999). 실버타운생활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윤경(1999). 가계 은퇴자산의 충분성. 소비자학연구, 10(4), 41-59.
- 윤석명(2000).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재정학회재정논집*, 15(1), 81-108.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가옥(1995). 노인의 거주형태와 가족관계 :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 나남출판사. 209-230.
- 이연숙, 이숙영, 박정아, 변혜령(1999). 노년기 상황에 따른 노인주거 선호특성에 관한 연구 -대학생 자녀를 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19(2), 147-158.
- 정경배 외(2001).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선구(1999). 군인연금제도. 공사연금제도개선 실무위원회.
- 진용성(1996). 근로자의 노후대처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최재식(1998). 공무원연금의 현안문제와 개선방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최재식(1999).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회 원인분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최현수(200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 22(3), 223-243.
- 통계청(2002).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 홍성희외 5인(1997).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노인의 생활문제인지와 생활계획의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151-169.
- 홍성희외 5인(1998).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중노년층의 노후생활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22.
- Beck, S. (1984).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 Differentials in Opportunity and Use. *Journal of Gerontologists*, 39, 596-602.
- Gale, W. & Scholz, J. K. (1994). IRAs and Household Saving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5), 1233-1260.
- Hurd, M. D. (1990). Research on the Elderly : Economic Status, Retirement, and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 565-637.
- Kilty, K. M. & Behling, J. H. (1986).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the Gerontology*, 26, 525-530.
- Hubbard, R. G., Skinner, J. & Zeldes, S. P. (1994). Why Do People Save? Expanding The Life Cycle Model : Precautionary Saving and Public Polic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174-179.
- Marloutou, Y. L. & Xiao, J. J. (1995) Perceived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CP*, 6, 17-24.
- Turner, M. J., Bailey, W. C. & Scott, J. P. (1994).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retirement planning among midlife university employees.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3(2), 143-156.
- 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no=180681&rel_no=1, 2004. 8. 4.
- Weagly, R. O. & Gannon, C. F. (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CP*, 2, 131-154.
- Williams, G. (1990). *The Experience of Housing in*

Retirement. Aldershot: Avebury.
Zhong, L. X., Titus, P. M., & Jhonson, D.P. (1993).
The Diversity of Income and Net Worth of the
Elderly. *The Proceedings of ACCI*, 74-81.

Zhong, L. X. (1995). Patterns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Ownership. *FCP*, 6, 99-106.

(2004년 7월 30일 접수, 2004년 9월 8일 채택)